

사업주와 근로자의
튼튼한 파트너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

고용유지 지원금



Contents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3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1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27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49
--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61
-------------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① 사업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②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무급휴업: ② 30일 이상 실시, ③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④ 노동위원회 승인

* ▲ 50% 이상 (19명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② 30일 이상 실시, ③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④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⑤ 근로자대표 합의

*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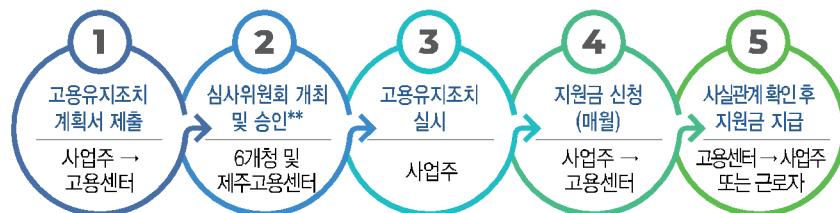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③ 지원금액

구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④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은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 신고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고용유지지원제도 비교

구 分	유급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 고용유지지원제도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업종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임금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지원금 상한액	• 1일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 1일 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지원기간	• 매년 18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80일(근로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p>* '21년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90일 연장(연장기간 월 50만원 정액지급)</p>
고 용 조 정 이 불 가 피 한 사 유	기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일 직전 월 •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좌동
	재고량	• 50% 이상 증가		• 50% 이상 증가
	생산량	• 15% 이상 감소		• 30% 이상 감소
	매출액	• 15% 이상 감소		• 30% 이상 감소
	재고량·매출액 추이	• 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감소) 추세		• 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업종·지역 경제여건	• 직업안정 기관장이 인정		•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사전절차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실시
휴업·휴직 규모율	(휴업)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달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단, 조선업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의 ▲ 50% 이상 (19명 이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5명 미만 사업장 지원 불가 	• 좌동
	(휴직) 1개월 이상 실시(근로자단위)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상 실시 ◆ 피보험자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 10% 이상 (100명~999명) ▲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21년에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 허용 	• 좌동



고용유지지원금 유의사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일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지원의 제한

지원금 부지급



- ①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하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새로 고용하는 경우
 - * 필수기능인력 퇴사로 인해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소적으로 멀어 통근이 불가능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
- ③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 ④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 ① 일용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 ③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①부정수급액 반환 + ②추가징수 + ③지급 제한 + ④형사처벌

① 부정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 명령하고,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 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② 추가징수

추가징수 산정 기준	추가 징수액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부정행위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③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 설정

300만원 미만	3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지급제한 기간 동안 고용안정장려금 전체 부지급

④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부정수급 유형

- ①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 ③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④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⑥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⑦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돌려 받는 경우
- ⑧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개편내용('21.1.1 시행)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현행	개선
근로자 지원요건	피보험 가입기간 제한 없음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단, '21년에는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지대 해소 (파견, 용역 등)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휴업규모를,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지자체의 명령 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30일 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매출액 등 비교시점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 * '21년의 경우 '20년과 비교	'21년도는 ' 19년도 매출액 등과 비교 가능 ' * 코로나19 정기화로 '20년 매출액 등이 대폭 감소한 심황 고려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4~6개월전 까지의 근로자 전체 월평균 총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 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 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현행	개선
무급휴직 사진요건 확대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지원범위 확대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21년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 휴직 허용
특별업종 지원기간 연장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총 180일간 지원 * 평균임금의 50% 이내(1일한도 6.6만원)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 정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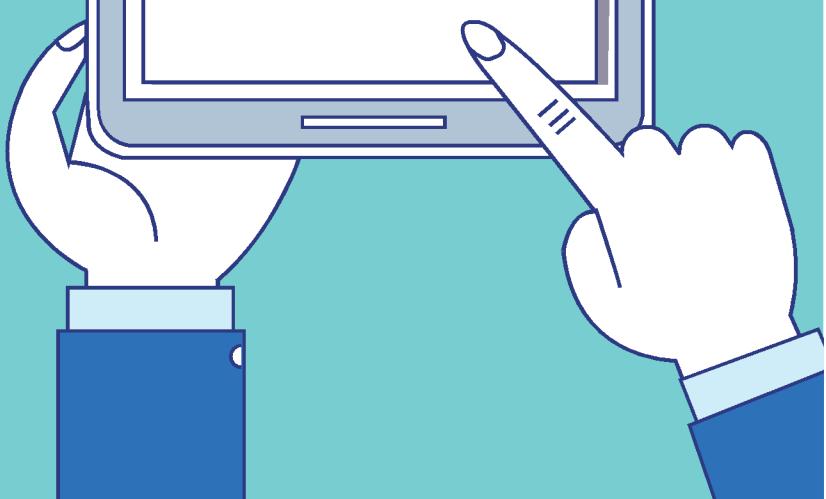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_9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①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의미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 유지조치
-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② 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月)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지급
-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③ 지원금액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 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④ 지원기간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휴업·휴직을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휴직



① 휴직의 의미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② 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

③ 지원금액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④ 지원기간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휴업·휴직을 같은 날에 실시한 경우 1일로 산정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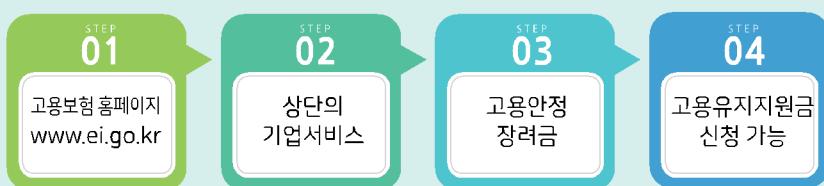


1.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하면 됩니다.(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참조 P.61)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다만, '20년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월까지 지속된 경우 1월 내 사후신고 가능합니다.(30일까지 소급지원 가능)

〈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사례 1

- 고용유지조치(휴직)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21.1.4.에 실시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30일 내에 신고하였으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20.12.8.)부터 소급지원이 가능

사례 2

- 고용유지조치를 '20.12.8.부터 실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를 '21.1.13.일에 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이 지나 신고하였으므로, 30일까지만 소급지원 가능하므로 '20.12.15.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소급지원 가능

3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 (휴업 또는 휴직수당)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 또는 휴직수당 2/3
▲대규모기업: 휴업 또는 휴직수당 1/2 또는 2/3

5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6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7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연장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 경우 연장 근로가 반복·정형화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제조업 사업장 등의 경우 매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퇴근부를 통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증빙 된다면 해당 출퇴근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9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고용유지조치기간(첫날부터 종료일)과 이후 1개월까지입니다.

10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1 파견·용역업체의 경우 언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1년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도 파견업체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었으나,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파견·용역업체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파견·용역 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개정사항은 1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부터 적용됩니다.

12 파견·용역업체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소속 피보험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명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다만,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13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급제한, 추가징수(최대 5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관광·공연업 등(지원기간: '20.3.16~'21.3.31.)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 「관광진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항공사업법」, 「공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업체

▶ **지정 업종 범위**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코드를 말하며, N752, R901는 소분류, 나머지 코드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업종	분류 기준	
	업종코드	개별법
여행업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R901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업종코드	• 55101(호텔업) • 55103(휴양콘도 운영업)

업종	분류 기준	
관광숙박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9232(전세버스 운송업) 50111(외항 여객 운송업) 50121(내항 여객 운송업)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관광운송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 3조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공연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항공기취급업 등(지원기간: '20.4.27~'21.3.31.)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또는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면허, 등록, 소관부처 장관 확인 등)으로 확인된 업체

업종	분류 기준	
항공기 취급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130(면세점)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전체 매출액 중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지원기간 '20.12.21~'21.3.31) <p>*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p>
전시 · 국제회의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992(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 노선과 관련된 업체

① 특별지원 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구분	지원 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휴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우대

지원금명	일반업종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② 경과조치 등

● 사업주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적용*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4조,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77호, 2020.12.31.)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현행 법령 조회 가능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Q&A



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원 수준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3/4으로 상향됩니다.

② 언제부터 상향지원이 되는 건가요?

-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예시 〈여행업〉 휴업기간이 '20.3.2.~'20.3.31.인 경우 '20.3.2.~'20.3.15.까지 기준 지원 수준인 2/3, '20.3.16.~'20.3.31.은 상향된 9/10지원

③ 1일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도 변경되는 건가요?

- 1일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으로 상향되며, 대규모기업은 6.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지원기간은 연 180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④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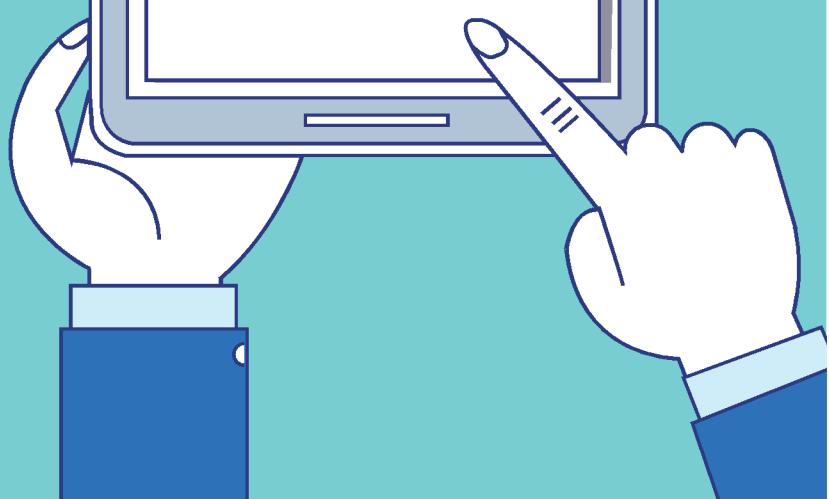
-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업종) 30일 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특별업종(조선업 제외)은 지정기간 동안 지원기간을 90일 연장(180일→270일)하며, 연장기간동안 월 5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②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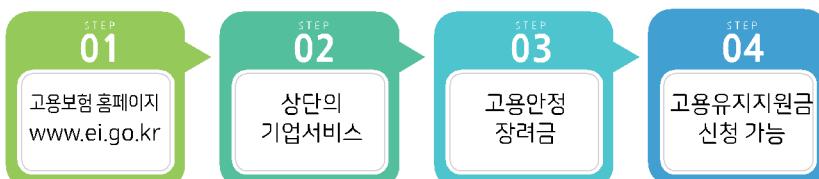


1.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②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

- 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해주세요.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P.61>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① 고용유지(휴업)지원금

●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신청서(휴업수당 지급후 매달)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유지(휴직)지원금

● 고용유지(휴직)조치 계획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하는 서류
-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실제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휴직수당지급후 매달)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 휴직을 확인하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유급휴직)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1. 로그인 하기

• 메인화면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업서비스 – 고용인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유급휴업)지원금 혹은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1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2020	년	월	2 회차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교대제 계급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월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계획신고서	<input type="button" value="계획변경신고서"/>	<input type="button" value="신형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REDACTED]	미규모기업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槐한
	명칭	[REDACTED]		
	소재지	[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총대전화번호	[REDACTED]
고용보험료 연체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연체내역 확인	피보험자수

•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2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등록된 관련사업장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REDACTED] 선택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련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행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이후 신청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장의 피보험자도 함께 대상자명단에 작성 가능합니다.

2.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_31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3

1 파견 수급 사업장 여부

파견 수급 사업장 여부	사용(도급)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2 웹 페이지 메시지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3 웹 페이지 메시지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

[확인](#)

[저장](#) [화면초기화](#)

- ① 파견/수급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파견/수급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② 파견/수급 사업장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③ 입력한 사업장관리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피보험자 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4

2021년 05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하위회사](#) [별도기](#)

업종 매일 주5일 주6일

연 번	주민등록번호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총업일수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설명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00 일	10.00 시간	4.00 시간			
	①기준 시간																	10	10.00 시간				
1	단축 시간																	4	4.00 시간				
	일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②기준 시간																						
	단축 시간																						

[대상자 등록](#) [대상자 액셀 등록](#) [기동률자 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기준시간과 단축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시간이 계산됩니다.
-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액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액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대상자 액셀등록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
- 기 등록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 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준근로시간에는 각 일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반복적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5

2021년 05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 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총업일수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 □	[REDACTED]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00일
		④기준 시간							8									8	24시간
		단축 시간																6	22시간
6 □	[REDACTED]	일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④기준 시간																8	
		단축 시간																8	
총원 6명																			
<input type="button" value="전체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대상자 수정"/> <input type="button" value="대상자 삭제"/> <input type="button" value="대상자 전체 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엑셀 저장"/>																			

• 대상자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명단은 한 페이지당 5명까지 보여지며 수정한도 또한 5명입니다.

• 전체보기: 입력된 대상을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하는 팝업창을 보여줍니다.

• 대상자 수정: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을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4) 폐이지의 입력화면으로 이동시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대상자 삭제: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을 삭제합니다.

• 대상자 전체 삭제: 입력된 대상자 전체를 일괄 삭제합니다.

• 엑셀 저장: 입력된 대상자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6

* 알리드됩니다: 입력이 비활성화 된 항목은 하면 상단의 대상자 입력시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선행년월과 2021.1.1 이후인 휴업지원금 계획선택 환경 선택서>

구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짜 표기일자			작전 1개월	작전 2개월	작전 3개월
기준 기간	④ 소정근로시간	1,000	작성선택	작성선택	작성선택	
총 근로 시간 (선택 항목) (단축 기준) (④선택+⑤연장)	④ 연장근로시간 (선택 항목) (단축 기준) (④선택+⑤연장)	200	200	200	200	
총 근로시간 (④선택+⑤연장)	1,200	작성선택	작성선택	작성선택		
고용 유지 조치 내용	④(05 월) 고용유지조치 기간(소정근로일수) ~ 2021/05/30 (30 일)	2021/05/01 ~ 2021/05/30 (30 일)	④(05 월) 전체 피보험자 수 11 명			
고용 유지 조치 내용	④(05 월) 고용유지조치 대 상 피보험자 수 10 명	④고용유지조치기간 총 출근 시간 758 시간				
내용	④(06 월) 단축한 근로시간 442.29 시간	④ 근로시간 단축률 56.83 %				
고용유지조치 기간 선택	선택					
고용유지조치 상세사유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②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 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성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②란은 연장근로가 비복·정형화된 경우(연장근로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7)로계약서에 적시된 경우 또는 특정 요일, 특정 주(週)에 일정 시간동안의 일정근로가 단복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그로시각을 적습니다.
- ③란은 ①란과 ②란을 합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④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성, 고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적습니다. (예: '20, 3, 1, ~ '20, 3, 31, 22일)
- ⑤란은 1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정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 ⑥란은 1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성, 고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⑦란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개월간) 동안 피보험자별 근무월 총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⑧란은 ⑦란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⑨란은 ⑦란 × ⑧란 근로시간 × 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 ⑩란은 ⑧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7

* 파일용량은 SMB 미화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파일은 압축후 업로드를 권장 합니다.
* 등록 가능한 파일
[zip, nr, hwp, fl, gif, jpg, jpeg, xls, pdf, hwp, docx, doc, ppt, pptx, xls, xlsx, avi, chm, gif, png, pdf, 7z, msi, 7z, rar, qz, nrf]
* 자 속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익스플로러 와 탐색자에서 <크롬, 엣지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찾아보기]	2. 배출액, 장부, 출산·재고내역, 순익계산서, 세금계산서, 푸기기자회계 표준표준 등 영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찾아보기]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찾아보기]	기타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checkbox"/> [찾아보기]
--	--	--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저장] **[화면초기화]**
[전송] **[수정]** **[삭제]** **[변경신청내역]** **[화면초기화]**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파견·수급사업주가 사용업체 또는 원청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재 첨부파일에 등록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라며, 등록 실패 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어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어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원료됩니다.(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3.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 8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input type="checkbox"/> 년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회자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교대제 계산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02/25 처리기간 1 일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접수]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계획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신청서]

> 고용보험 - 신고내역 조회

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

순번	계획신고접수번호	시행년도	시행월	시행회차	계획서종류
1	[REDACTED]	2020	02	1	계획

-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 원하시는 년도/월의 계획신고 접수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1

> 신청 정보 입력

* 신청년월	2020 년 02 월	회차
신고서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유급휴직 <input type="radio"/> 무급휴직 (201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결수번호	결수일자	2020/02/25
처리기간	1 월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REDACTED]	대규모기업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명칭	[REDACTED]		
소재지	[REDACTED]		
* 전화번호	[REDACTED]	최대전화번호	[REDACTED] <input type="radio"/> 담당자 [REDACTED]
고용보험료 연체여부	있음	연체내역 확인	피보험자수 [REDACTED] 양

-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2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추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등록된 관련사업장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행추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저장

화면초기화

-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련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행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이후 신청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장의 피보험자도 함께 대상자명단에 작성 가능합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3

1 파견 수급 사업장 여부

파견 수급 사업장 여부	사용(도급)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사업장 근무 피보험자 수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명

2 업 페이저 메시지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3 웹 페이저 메시지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

확인

저장

화면초기화

- ① 파견/수급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파견/수급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② 파견/수급 사업장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③ 입력한 사업장관리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피보험자 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4

고용유지조치(유직) 대상자 명단 **[취업자]** **[별도기]**

* 별기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직예정(변경)기간	총직일수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증명

0 명

대상자 등록

대상자 엑셀 등록

기동록자 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휴직예정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직일수가 계산됩니다.
-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엑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
- 기동록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5

※ 알려드립니다! : 입력이 비활성화 된 항목은 화면 상단의 대상자 입력시 자동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고용 유지 조치 (휴직)	* 고용유지 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 <input type="button"/>	
내용	* 고용유지 조치(휴직) 기간	<input type="text"/> 0 명
	<input type="button"/> ~ <input type="button"/>	
기타	* 고용유지 조치(휴직) 사용 (선택)	<input type="button"/> 선택
	<input type="text"/>	
* 고용유지 조치(휴직) 상세사유 <input type="text"/>		

-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을 입력합니다.
-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 고용유지조치 사용을 선택한 후, 상세사유를 적습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서 작성하기 - 6

• 파일용량은 5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파일은 압축후 업로드를 권장 합니다.
 • 등록 가능한 파일
 (.zip, .rar, .hwp, .rtf, .gif, .jpg, .txt, .pdf, .hwpx, .docx, .doc, .ppt, .pptx, .xls, .xlsx, .xlw, .chm, .HFF, .png, .nwd, .7z, .odt, .rb, .tar, .gz, .ab2)

•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웹스룹로더 와 타브리우저 (크롬, 엣지 등)를 사용하시는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비율액갈등, 생산·재고마찰, 습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등 제작으로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시본 1부	<input type="button"/> 삭제 <input type="button"/> 찾아보기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본 1부	<input type="button"/> 삭제 <input type="button"/> 찾아보기
	기타 첨부파일	<input type="button"/> 삭제 <input type="button"/> 찾아보기

수수료
업로드
 전송 수정 삭제 민원신청내역 화면초기화

저장 화면초기화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파견수급사업주가 사용업체 또는 원창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타 첨부파일에 등록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리며, 등록 실패 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어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어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4. 고용유지(유급휴직)조치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 7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월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회차
신고서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유급휴직 <input type="radio"/> 무급휴직
접수번호	<input type="text"/>
접수일자	2020/02/25
처리기간	1 일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검색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계획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신청서]

▶ 고용보령 - 신고내역 조회

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

순번	계획신고접수번호	시행년도	시행월	시행회차	계획서종류
1	[REDACTED]	2020	02	I	계획

-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 원하시는 년도/월의 계획신고 접수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1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회차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고대체 개편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input type="text"/>
접수일자	2020/02/28
처리기간	10 일
②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검색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계획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신청서]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대규모기업 <input type="radio"/> 해당 <input checked="" type="radio"/> 비해당
명칭	<input type="text"/>	
사업장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달달자 <input type="text"/>
고용보험료 낸체여부	<input type="checkbox"/>	연기내역 확인

- 신청서 탭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합니다.
• 빙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2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추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등록된 관련사업장 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관련사업장 정보가 없습니다.



관련사업장 현황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추가]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123456789	■■■■■	■■■■■	■■■■■	■■■■■	-

[저장] [화면초기화]

-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련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이후 신청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장의 피보험자도 함께 대상자명단에 작성 가능합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3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년	월	회차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교대체 개편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1	접수일자	2020/02/28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결제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고용보험 - 신고내역 조회



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

2

순번	계획신고접수번호	시행년도	시행월	시행회차	계획서종류
1	■■■■■	2020	02	20	계획
2	■■■■■	2020	02	18	변경

①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② 원하시는 년도/월의 계획신고 접수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5

2021년 01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하위목록](#) [행주가](#)

※ 허용수단 고급형(高級型)은 위법한 증시기구 비용입니다.

※ 출입수당 지급과 함께 입학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수당 지급액은 사업주가 출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입수당입니다(월 입금 1회)

□ 예상 □ 대입 □ 중학교 □ 중등

-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시간이 계산됩니다.
 -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엑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
 - 기 등록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 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6

2021년 01월 고용유지조처 대상자 명단

연번	주민등록번호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휴업수당지급액																															
			기준근로시간	단축시간	총업일수	자활급신청액																												
성명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000,000 원																
1	[REDACTED]	①기준 시간	8															32.00 시간																
	[REDACTED]	단축 시간	8															28.00 시간																
	[REDACTED]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00 일															
	[REDACTED]	①기준 시간			8	8	8												원															
	[REDACTED]	단축 시간			8	4	8																											

[전체보기] [대상자 수정] [대상자 삭제] [대상자 전체 삭제] [엑셀 저장]

- 대상자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대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명단은 한 페이지당 5명까지 보여지며 수정한도 또한 5명입니다.
- 전체보기: 입력된 대상을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하는 팝업창을 보여줍니다.
- 대상자 수정: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5] 페이지의 입력화면으로 이동시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대상자 삭제: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을 삭제합니다.
- 대상자 전체 삭제: 입력된 대상자 전체를 일괄 삭제합니다.
- 엑셀 저장: 입력된 대상자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7

* 파일용량은 5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파일은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zip,rar,bmp,BI,gif,jpg,jpeg,tif,pdf,jpg,jpgx,doc,docx,ppt,pptx,ods,ods,xls,xlsx,xlsb,xsl,gs,sldx]

*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맥스플로리 와 타브라우저 (크롬, 엣지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휴직거의 첨부 입금내역 사본 1부	삭제	찾아보기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내장 사본 1부	삭제	찾아보기
	3. 휴직증 증명하는 서류 1부	삭제	찾아보기
	기타 첨부파일	삭제	찾아보기

수수료 없음

[저장] [화면초기화]

[전송] [수정] [삭제] [민원신청내역] [회원조회]

-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리며, 등록 실패 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어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어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1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회차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교대제 개편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input type="text"/>
②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검색
① 계획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신청서 ▾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명칭	<input type="text"/>
사업장 소재지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달달자 <input type="text"/>
고용보험료 연체 여부	<input type="checkbox"/> 연체내역 확인

- ① 신청서 탭을 선택하면 신청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② 계획신고서 접수번호를 검색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2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회차
신고서 선택	<input type="radio"/> 근로시간조정 <input type="radio"/> 교대제 개편 <input checked="" type="radio"/> 휴업 등
접수번호	<input type="text"/> ① <input type="text"/> 접수일자 <input type="text"/> 처리기간 <input type="text"/> 월
②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input type="text"/> 검색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고용보험 - 신고내역 조회

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

순번	계획신고접수번호	시행년도	시행월	시행회차	계획서종류
1	<input type="text"/>	2020	02	20	계획
2	<input type="text"/>	2020	02	18	변경

- ① 계획신고서 접수번호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 ② 원하시는 년도/월의 계획신고 접수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3

관련사업장 현황 :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	------	------	----	----	----

등록된 관련사업장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확인번호	사업장명	사업주명	구분	비고	삭제
==문서번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저장 화면초기화

- 고용센터에서 관련사업장을 등록하여 처리한 이력이 있을 경우, 관련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행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할 사업장을 선택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이후 신청사업장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장의 피보험자도 함께 대상지명단에 작성 가능합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4

- 위와 같이 기 계획신고서에 등록한 정보(대상자명단, 고용유지현황, 신청내용)를 신청서로 불러옵니다.
-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세요.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 이후 최하단의 저정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기존의 대상자 명단에는 휴직수당지급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서에서 불러온 대상자명단에서 휴직수당지급액을 꼭 추가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5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하위목록	첨부파일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일수	휴직수당 지급액		
1	[]	[]	[] ~ []	[] 일	[]	▲	
2	[]	[]	[] ~ []	[] 일	[]	▼	
3	[]	[]	[] ~ []	[] 일	[]	▼	
4	[]	[]	[] ~ []	[] 일	[]	▼	
5	[]	[]	[] ~ []	[] 일	[]	▼	
6	[]	[]	[] ~ []	[] 일	[]	▼	
7	[]	[]	[] ~ []	[] 일	[]	▼	
8	[]	[]	[] ~ []	[] 일	[]	▼	
9	[]	[]	[] ~ []	[] 일	[]	▼	
10	[]	[]	[] ~ []	[] 일	[]	▼	
총연 0 명						[] 대상자 등록 [] 대상자 액셀 등록 [] 기동등록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상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액셀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대상자 액셀 등록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 기 등록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 등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6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첨부보기	[] 대상자 수정	[] 대상자 삭제	[] 대상자 전체 삭제	[] 액셀 저장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일수	휴직수당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1	[]	[]	2020/02/26~2020/02/28	3 일	700,000					
<input type="checkbox"/> 2	[]	[]	2020/02/26~2020/02/28	3 일						
계 :						2명				

- 대상자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대상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명단은 한 페이지당 5명까지 보여지며 수정한도 또한 5명입니다.
- 전체보기: 입력된 대상자를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하는 팝업창을 보여줍니다.
- 대상자 수정: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자를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5' 페이지의 입력화면으로 이동시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대상자 삭제: 체크박스가 선택된 대상자를 삭제합니다.
- 대상자 전체 삭제: 입력된 대상자 전체를 일괄 삭제합니다.
- 엑셀 저장: 입력된 대상자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귀하

* 파일용량은 5MB 이하로 첨부해 주시길 바리며, 다수의 파일은 압축후 업로드를 권장 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zip,rar,bmp,tt,gtf,psg,jpeg,txt,pdf,hwpx,doc,docx,ppt,pptx,xls,xlsx,xsl,htm,html,xml,ods,odsx,odt,odp,odc,odc]

*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맥스플로라 와 타브라우저 (크롬, 엣지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총작자의 휠별 임금미양 서면 1부 <input type="file"/> 2. 총작근로자의 휠별 수당 지급증명서면 1부 <input type="file"/> 3. 휠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input type="file"/> 기타첨부파일 <input type="file"/> <input type="fil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수수료 없음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화면초기화"/> <input type="button" value="전송"/>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button" value="민원신청내역"/> <input type="button" value="화면초기화"/>
---	--

-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적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라며, 등록 실패 시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어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어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1

신고서/신청서 작성 화면

① 대상자 엑셀 등록 버튼 클릭

- 대상자 명단 우측단의 대상자 엑셀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전산대체신고 팝업 창을 띵웁니다.

② 신고서/신청서 저장하지 않고 버튼 클릭 시

- 등록된 대상자 정보 등 화면상 빨간색 별표가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되어야 신고서/신청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저장 후, 대상자 엑셀 등록 버튼을 눌러 엑셀 업로드가 가능해집니다.



* 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2

① 파일첨부

전산대체 등록 (대로 고용한 희생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

파일첨부

전산대체 등록 찾아보기... 등록

② 파일포맷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 하여 고용안전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고용유지조치_유급무급_신고서.xls
고용유지조치_유급무급_신청서.xls
고용유지조치_유업_신고서(2021이후).xls
고용유지조치_유업_신청서(2021이후).xls

전산대체신고 화면

- ①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
-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 하여 고용안전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 ② 고용안전엑셀서식
- 다운받은 앱축파일을 해제하여 원하는 지원금의 신고서/신청서를 찾아 작성합니다.

* 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3

① 파일첨부

A	B	C	D	E	F	G	H
1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123456111111	0	0	0	0	0	0
3	123456111112	8	8	8	8	8	8
4	123456111113	8	8	8	8	8	8

② 파일선택

선판내에 등록 (대로 고용유지조치(유업) 내장자 확인)

파일선택

전산대체 등록 찾아보기... 등록

엑셀파일 작성 및 업로드 화면

- ① 고용안전엑셀서식 작성
- 원하는 지원금의 신고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예시) 고용유지(유업), 고용유지(유급휴직) 신고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엑셀의 도메인간 설명은 업로드전 삭제하세요.
 - 숫자값을 입력할경우 특수문자 없이 숫자만 입력 하세요.
 - 날짜값 입력시 특수문자(-) 없이 8자리로 입력 하세요.
ex)20140120
 - 순번은 순서대로 숫자만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속성을 텍스트 형태로 지정하십시오.
 - 엑셀파일 업로드시 피벗테이블이나 시트보호와 같은 특수 기능은 사용하지 마세요.
 - 텍스트파일 업로드시 데이터 구분을 위해 탭으로 구분합니다.
 - 엑셀파일에 작성된 대상자가 많을수록 업로드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고용보험페이지에 부하가 발생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업로드 하실 엑셀파일은 대상자 2000명 아래로 나누어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② 고용안전엑셀서식 업로드
- 전산대체등록 팝업 창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작성된 엑셀서식을 불러온 후, 등록버튼을 눌러 업로드 합니다.



* 대상자 엑셀 등록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4

① > 전산대체 등록 (고용유지조치(용업) 대상자 명단)

> 등록결과

총 11 건 중 4 건 인증처리

전체 신고 건수	11 건
인증 건수	4 건
도록 건수	7 건

[닫기]

업무처리 실패 내역

- [REDACTED] 이미 등록된 피보험자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가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 사용

②

2021년 05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고용유지조치 예상변경일/월	총합일수											
				기준근로시간	당回事간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REDACTED]	[REDACTED]	여	2021-05-01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REDACTED]	[REDACTED]	여	2021-05-01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40.20		

전산대체신고 데이터 검증 화면

① 데이터 검증 및 저장

-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등록된 대상자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대상자 등록정보가 맞는지 검증과정을 거칩니다.
- 정상 입력된 대상자의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 정상 등록되지 않은 잘못 입력된 대상자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실패사유를 띠워주어 추후 수정 후 재업로드 해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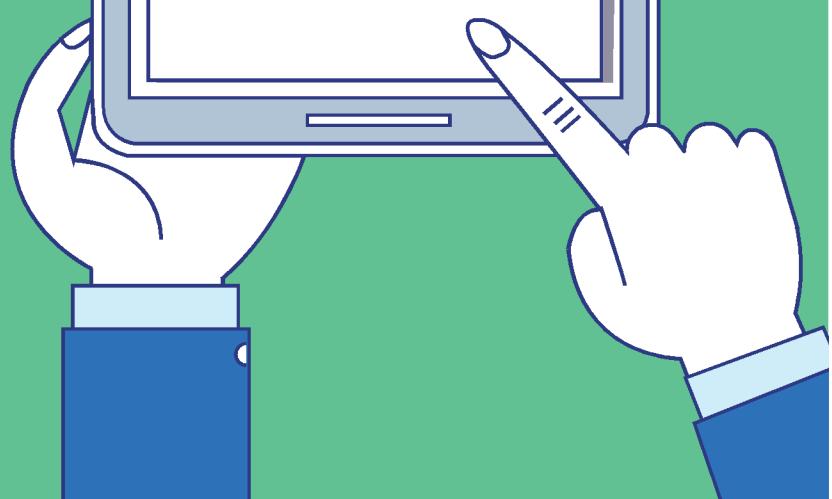
② 결과

- 신고서 '신청서에 등록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지원요건

- ① 무급휴업: ⑧30일 이상 실시, ⑨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⑩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명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② 무급휴직: ⑧30일 이상 실시, ⑨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⑩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⑪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전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1년에 유급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일수(연 180일)을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

② 지원금액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명 당 매월 10만원 지원(사업주지원금)

③ 지원절차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찾기

	무급휴업	무급휴직
유형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사전요건	노동위원회 승인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휴직 3개월 이상 실시
노사합의	협의	합의
실시기간	30일 이상	30일 이상
제출기한	실시 30일 전	실시 30일 전
결정	(청)심사위원회	(청)심사위원회
지원기간	최대 180일	최대 180일
지원금액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평균임금 50% 범위에서 결정 (1일 6.6만원 한도) 연장 90일 월 50만원 지원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비교 (상세내용)

① 무급휴업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무급휴업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업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무급휴업 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기준달 감소 기준</th></tr> </thead> <tbody> <tr> <td>재고</td><td>직전년도 직전 2분기</td><td>5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td></tr> <tr> <td>생산</td><td>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td><td>월평균 30% 이상 ↓</td></tr> <tr> <td rowspan="5">매출</td><td>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td><td>월평균 30% 이상 ↓</td></tr> <tr> <td>직전 2분기</td><td>월평균 계속 20% 이상 ↓</td></tr> <tr> <td>기타</td><td>직업안정기관의 잣이 인정</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직전 2분기	5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매출	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잣이 인정	좌동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직전 2분기	50% 이상 ↑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매출	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월평균 3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잣이 인정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 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휴업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실시요건	최소 실시 인원	근로자 대표 협의	좌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th>최소 실시 인원</th></tr> </thead> <tbody> <tr> <td>19명 이하</td><td>50% 이상</td></tr> <tr> <td>20~99명</td><td>10명 이상</td></tr> <tr> <td>100~999명</td><td>10% 이상</td></tr> <tr> <td>1,000명 이상</td><td>100명 이상</td></tr> </tbody> </table> <p>* 5명 미만 사업장 지원 제외</p>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구분	최소 실시 인원																		
19명 이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기간	3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무급휴직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무급휴직																						
	무급휴직 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기준</th><th>기준달 감소 기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재고</td><td>직전년도</td><td>50% 이상 ↑</td></tr> <tr> <td>직전 2분기</td><td>월평균 계속 20% 이상 ↑</td></tr> <tr> <td rowspan="3">생산</td><td>직전년도 월평균</td><td rowspan="3">월평균 30% 이상 ↓</td></tr> <tr> <td>직전년도 같은달</td></tr> <tr> <td>직전 3개월</td></tr> <tr> <td rowspan="4">매출</td><td>직전년도 월평균</td><td rowspan="4">월평균 30% 이상 ↓</td></tr> <tr> <td>직전년도 같은달</td></tr> <tr> <td>직전 3개월</td></tr> <tr> <td>직전 2분기</td></tr> <tr> <td>기타</td><td>직업안정기관의 정이 인정</td><td></td></tr> </tbody> </table>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 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매출	직전년도 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정이 인정		
구분	기준	기준달 감소 기준																							
재고	직전년도	50% 이상 ↑																							
	직전 2분기	월평균 계속 20% 이상 ↑																							
생산	직전년도 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매출	직전년도 월평균	월평균 30% 이상 ↓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직전 2분기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정이 인정																								
사전요건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에 첨부 자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치 실시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근로자 대표 합의	근로자 대표*와 무급휴직 합의 <small>*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small>	좌동																						
	최소 실시 인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최소 실시 인원</th></tr> </thead> <tbody> <tr> <td>99명 이하</td><td>10명 이상</td></tr> <tr> <td>100~999명</td><td>10% 이상</td></tr> <tr> <td>1,000명 이상</td><td>100명 이상</td></tr> </tbody> </table> <p>*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1년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연 180일)을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p>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좌동														
구분	최소 실시 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기간	30일 이상 실시	좌동																						

③ 공통사항

단계	구분	① 일반업종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 * 사진요건 확인자료 함께 제출							
	제출내용	① 고용유지조치계획* *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 휴업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기준, 실시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향상 계획*〈필수〉 * 내용, 기간, 대상자, 비용 등							
지원금 신청·지급	신청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신청							
	공제	(사업주)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결정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신청 * '21년에 한해 "별도임금수입+지원금"이 월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초과분 제하고 지급							
	지급	(센터)근로자에게 지급							
기타	지원일수	피보험자 1명 최대 180일 한도 최대 180일 + 90일 (연장 90일 월 50만원 지원)							
	반려사유	① 시행령 요건 미달 ② 3년 이상 같은달 고용유지 조치 실시 ③ 고용보험료 체납 ④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임금 체불 ⑤ 보완 요구 사항 기한내 미제출							
	지원금 지급액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일 상한액: 6.6만원							
	감원방지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이직금지							
	지급 제외자	①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③ 경영상 이유에 따라 권고퇴직이 예정된 자							
	지원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급제한</th></tr> </thead> <tbody> <tr> <td>계획 초과 이행</td><td>계획에 따라 지급</td></tr> <tr> <td>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td><td>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td></tr> <tr> <td>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td><td>전부 부지급</td></tr> </tbody> </table>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구분	지급제한								
계획 초과 이행	계획에 따라 지급								
계획 1/2 미만 미달 이행	이행 내용에 따라 지급								
계획 1/2 이상 미달 이행	전부 부지급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FAQ



1.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4월~)

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요건 확인	2.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	3. 신청 승인 후 통보	4.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이상)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법령상 무급 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신청 -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된 계획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

-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 휴업·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

기준		제출 서류(예시)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생산대장
매출액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② 무급 휴업·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기 준		제출 서류
무급 휴업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19명 이하: 50%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1) 노동위원회 승인서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기준	제출 서류
무급 휴직	1)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상 실시 2)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small>*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1년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연 180일)을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small> 3)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휴직 실시 <small>(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small> 4)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	1)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 휴업·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1 누가 신청하나요?

-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 휴업·휴직 실시 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2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명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 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13.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최소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1년에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일수(연 180일)을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이 1명 이상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

4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6

6.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 (유사 질의)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변조하는 경우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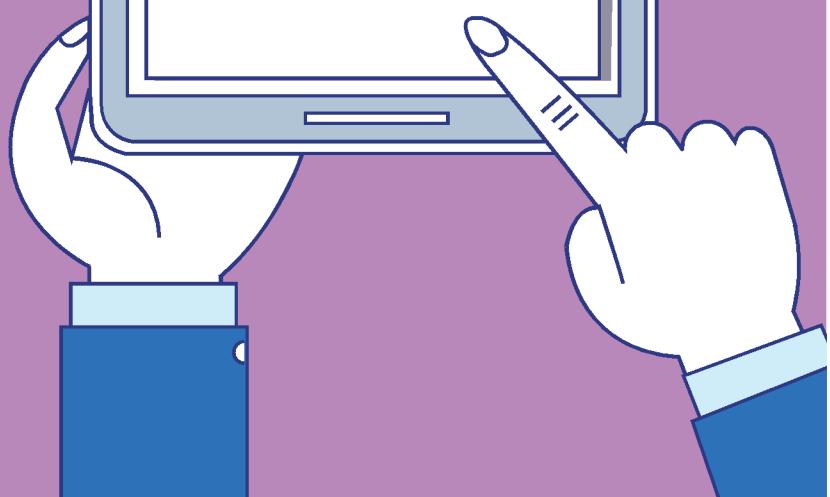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제한, 추가징수(최대 5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점)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 울 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50, 9층 기업지원과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울서초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22, 4940, 4977~4979
	서울 강남지청	서울강남 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서울 동부지청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서울 서부지청	서울서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청프리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3410, 3422, 6001, 6003~5, 6025, 6030, 6034, 6065
	서울 남부지청	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코레일유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02)2639-2403 ~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서울 북부지청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 관악지청	서울관악 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96, 9388~9, 9393~4, 9338, 9309, 9331, 9219, 9348, 9220, 9233, 9215

첨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 청	중부청	인천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석천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71~81 032)460-4683~4, 4686~7, 4689, 4564, 4623, 4723, 4628, 4583, 4560, 4585
	인천 북부지청	인천북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032)540-5641
	인천 북부지청	인천서부 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서구청 제2정사) 10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032)540-2050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 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60 KD타워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5, 8927, 8952 032)310-8855
	부천지청	김포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0942
	고양지청	고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 고양고용센터 별관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 3964, 3957, 3988, 3997~3998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피크 4층 기업지원팀 (성남지청 별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 양평군·이천시·여주시· 하남시	031)739-3170~3, 3122, 4991, 4916, 3160, 3163, 3178 (유지)-4907, 3136, 4992, 4936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밸타워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 광명시·의왕시·군포시	031)463-0761~5, 0767, 0769, 0729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고용인정상담: 031)412-6940 ~6945, 6948, 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946~694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05

첨	첨(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 청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30, 250-1924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망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1932
	원주시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033)570-1910
부산 청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4 033)371-6261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9(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 영도구·남구· 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부산 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5 (봉만동 1072-7 영동빌딩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 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44 ~7247, 7288 051)760-7214, 7216, 7282, 7210
	부산 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강서구	051)330-9970~2, 9945, 9952~5, 9922~3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미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합천군· 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4, 1926, 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055)330-6434~6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 산청군·하동군·남해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첨	첨(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동구· 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053)667-6006
	대구 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053)605-6460~6, 6477, 6479
	대구 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 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성주군	054)970-1906~8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2, 3055~7, 3070, 3077, 3132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사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31
광주청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 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6~8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 장수군·진안군·원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6

첨	첨(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주 청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0626, 0648, 0655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총호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 고흥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대전 청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2905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432~39, 6012~19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66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 괴산군·보은군·증평군· 옥천군·영동군	043)229-0704 ~0709, 0720
제 주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이산시·예산군	041)620-7400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76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 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462, 4470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
고용유지지원금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연락처	044-202-7219
인쇄처	동명기획 ☎ 044)868-7542

-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